

## ● 환경부고시 제2025-7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를 제정합니다.

2025년 01월 13일

환경부장관

###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배출자 또는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징역형 또는 벌금형,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말한다.
2. “위반사실”이란 영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56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적용한다.

**제4조(공표대상)** ① 위반사실 공표 대상은 공표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 제5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배출자 등으로 한다.

- ② 위반사실 공표 심의 대상을 선정할 경우 법 제56조의3제1항 후단과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7항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동기·정도·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공표절차)** ① 시·도지사는 위반사실 공표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접수 및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도지사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제4조제2항에 따라 공표 심의 대상을 선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사실 공표 대상을 결정하여야 하며, 심의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위반사실 공표 대상으로 결정된 배출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출의 구체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을 따른다.

제6조(공표시기 및 방법)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공표 대상으로 결정된 위반사실을 다음의 서식으로 매년 4월 30일까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으며, 게시 기간은 게시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공표 -

연번	종류	명칭	소재지	대표자	공사명*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 또는 벌칙내용		
						위반조항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권자	처분내용
	배출자	00건설	...	...		법 제00조	보관기준 위반	2024.00.00	...	과태료 5백만원
	수집·운반 업자	00환경	...	...		법 제00조	수집·운반 기준 위반	2024.00.00	...	영업정지 1개월
	중간처리 업자	00환경	...	...		법 제00조	처리기준 위반	2024.00.00	...	과징금 2천만원

\* 공사명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법 시행규칙 [별표7]) 상 공사명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라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위반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표대상과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장관은 위반사실 공표대상과 시기를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 2025년 위반사실 공표 : 2024년 3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위반사실을 대상으로 2025년 4월 30일부터 1년간 게시
- 2026년 이후 위반사실 공표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위반사실을 대상으로 당해연도 4월 30일부터 1년간 게시